

# 안내장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새싹들이 돋아나는 희망찬 계절에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올해는 우리 학교 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선거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부디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 등록기간: 2023. 3. 6. ~ 3. 10.(근무시간 내)

◇ 등록 장소: 안성중고등학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입후보 자격

①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선거방법 : 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 및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① 투표용지 회수(가정통신문, 우편투표의 경우): 2023. 3. 15. ~ 3. 16.

② 투표 : 2023. 3. 17.(금)

2023년 3월 6일

안성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